

# 투자권유준칙

제정 2022. 6. 21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 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 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 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 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 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 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 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9조제4항
3. “포트폴리오투자” 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

- 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투자자 구분

### 제4조(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투자상담 요청 시 투자자의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구하더라도 계약체결이 불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 제 1 절 투자자정보

#### 제7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유형을 선택 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 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3.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 ⑦ 회사의 임직원은 투자자와의 상담 과정을 통해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과 임직원이 파악한 투자자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담보고서에 별도로 기록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

로부터 12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 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 제 2 절 투자권유

### 제9조 (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3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11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ㄱ.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ㄴ.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ㄷ.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제 3 절 설명의무

#### 제12조 (설명 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금소법시행령제14조제4항제5호)
  2.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금소법감독규정 제13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⑧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

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제 5 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제13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제 6 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 제14조 (계약서류의 교부)

-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 제14조의2 (청약의 철회)

-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4의2 및 제14조의3에서 ‘서면등’ 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①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금전등’ 이라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의3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할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①의4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③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 제14조의3 (위법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 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 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16조 (계약 후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의 확인절차)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투자자(재계약, 추가계약은 제외)로서 만 65세이상 개인고객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유선으로(단,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 절차가 관계법규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 제18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제19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①의2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0조(기타)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법시행령, 규정 및 협회관련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2년 6월 21일자로 시행한다. 단, 시행일시 이전에 기 조치된 사항은 본 준칙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b>&lt;기초정보&gt;</b>		배점
1. 연령대	①만19세 이하 ②만20~40세 ③만41~50세 ④만51~60세 ⑤만61세 이상	
2. 투자 예정 기간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상품종류	⑤ 공격투자형: 파생상품 투자펀드, ELF, ELW, 선물옵션, 외화증권, 주식 신용거래 등
		④ 적극투자형: 주식형/혼합주식형/인덱스펀드, 원금비보장형 ELS, 주식,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CP 등
		③ 위험중립형: 혼합채권형펀드, 원금부분보장형 ELS, 신용도가 중간등급인 회사채/ CP 등
		② 안정추구형: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CP 등
		① 안정형: 은행 예·적금, MMF, CM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등
4. 금융지식	④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음	
	① 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5. 총금융자산 대비 투자비중	① 10% 이하 ② 20% 이하 ③ 30% 이하 ④ 40% 이하 ⑤ 40% 초과	
6. 향후 수입 원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7. 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③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②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합계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투자자확인사항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 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귀사가 매분기 실시하는 매분기 투자자정보 변경 여부 확인 시, 본인이 그 변경 여부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 정보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은 투자자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일 자 : 20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 \_\_\_\_\_ (서명/인)

《투자자정보 기존과 동일한 경우》

본인은 상기 투자자정보 확인서상의 내용이 변동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시 : 20    년    월    일

고 객 명 : \_\_\_\_\_

엑스포넨셜자산용 상담자명 : \_\_\_\_\_

[별지 제2호]

## 적합성판단기준

### (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점수화 기준)

#### □ 문항별 배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문항1	4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2	1점	2점	3점	4점	5점
문항3	1점	2점	3점	4점	5점
문항4	1점	2점	3점	4점	-
문항5	5점	4점	3점	2점	1점
문항6	3점	2점	1점	-	-
문항7	-2점	2점	4점	6점	-

#### □ 점수계산방법

문항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시)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인 경우 :  $26\text{점} / 32\text{점} \times 100\text{점} = 81.3\text{점}$

#### □ 평가점수에 의한 투자성향 분류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20점 이하	안정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추구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위험중립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적극투자형
80점 초과	공격투자형

##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매우 높은 위험 (1 등급)	높은위험 (2 등급)	다소 높은 위험 (3 등급)	보통위험 (4 등급)	낮은위험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6 등급)
안정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투자권유 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 불가					
공격투자형						

[별지 제3호]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투자자"란 65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2. "초고령투자자"란 80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3.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4.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가.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나.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라.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마.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바.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사.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아.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자.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 차.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제2장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3조(본사 전담부서)**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 제4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①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 절차를 적용한다.

②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자동증권, 후순위 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제5조(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확인)

①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팀장 등)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직 직원(팀장 등)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직 직원(팀장 등)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6조(상품 개발·판매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①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② 고령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한다.

### 제3장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제7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교육) 준법감시담당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이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불완전판매 점검)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받아 고령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제10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4장 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 제11조(투자권유 유의 상품 판매 자제)

①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

③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과 회사가 투자권유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고객이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를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후 회사의 승인을 득한후 판매할 수 있다.

### 제12조(조력자와의 상담)

①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가족 등 조력자와 함께 방문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2. 고객이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 조력자로부터 설명을 같이 들었다는 서명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녹취를 해두어야 한다.

②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5장 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회사는 향후 분쟁 등에 대비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은 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녹음·녹화하거나 기록·유지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 계약절차의 적정성 확인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에 의거 투자일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투자자로서 만 65세 이상 개인 고객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계약절차 등의 적정성을 확인

계약자 성명	계약일자	계약담당직원

- 고객이 투자권유문서를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았음을 확인
- 고객이 투자원금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는지 확인
- 고객의 투자자유형 및 세부유형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는지 확인
- 고객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 투자자의 신분을 확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일자	통화시간	확인자	마케팅팀장	연락처
		인	인	

기타 기재사항